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2일, 김상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2.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3.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상훈의원)

최근 SNS·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장 표현, 질병 치료·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 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복우)

- 식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개인의 신체나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를 위한 서면의결을 허용하려는 취지

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방미심위 회의가 대면의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미통위·방미심위는 온라인상 식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며, 한국방송협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방미심위 서면의결은 엄격한 해석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서면의결 대상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이만희의원, 조인철의원, 김상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